

#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2254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12월 20일
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표창 서식 결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 제1공적심의회 구성요건을 상위법(「상훈법 시행령」)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안 제10조제1항에 표창 서식의 세부 양식은 시장이 정한다는 내용의 후단을 신설함.
- 안 제13조제3항의 제1공적심의회 구성 인원을 「상훈법 시행령」 공적심사위원회의 “6명 이상 11명 이하”와 동일하게 수정함.

#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각 표창 서식의 세부 양식은 시장이 정한다.

안 제13조제3항 중 “5명 이상 10명 이하”를 “6명 이상 11명 이하”로 한다.

## 〈 수정안 조문 대비표 〉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0조(표창방법 및 부상)  <u>① 표창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창장,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장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.</u></p>	<p>제10조(표창방법 및 부상)  <u>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,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.</u></p>	<p>제10조(표창방법 및 부상)  <u>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,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. 이 경우 각 표창 서식의 세부 양식은 시장이 정한다.</u></p>
<p>제13조(시 공적심의회) ①  <u>시 본청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심의회를 둔다.</u></p> <p>1. 국무총리 표창이상 훈격의 정부포상 및 모범 공무원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의회를 두고, 제1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1부 시장이 되고, 위원은 시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</p> <p>2. 시장표창 대상 및 장관</p>	<p>제13조(시 공적심의회) ①  <u>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제1공적심의회와 제2공적심의회(이하 “공적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&lt;삭 제&gt;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
<p>2. 시장표창 대상 및 장관</p>	<p>&lt;삭 제&gt;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
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, 제2공적심의회를 두고, 제2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, 위원은 시 4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<신 설>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② 제1공적심의회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(공훈에 따른 훈장, 포장 등의 등급을 말한다)의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한다.

⑥ 공적심의회는 위원장이 ----- 미리 지명한 -----.

③ 제1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(1)부시장이 맡고, 위원은 시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④ 제2공적심의회는 시장

(개정안과 같음)

(개정안과 같음)

③ 제1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**6명 이상 11명 이하**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(1)부시장이 맡고, 위원은 시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(개정안과 같음)

<신 설>

또는 장관급 상당의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한다.

⑤ 제2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맡고, 위원은 시 4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 (개정안과 같음)

<신 설>

⑦ 공적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. (개정안과 같음)

##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”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적용범위)”를 “(다른 조례와의 관계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시”를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, “조례가”를 “조례에서”로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한한다”를 “한한다. 이하 같다”로 한다.

제7조제1호 본문 중 “직무에 특히 성실”을 “직무를 성실히 수행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공적이 현저하여 제13조에 따른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등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“공무원 등과”를 각각 “공무원등,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,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. 이 경우 각 표창 서식의 세부 양식은 시장이 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”을 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얻은 후 추천한다”를 “미리 받아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본문 중 “표창시 해당”을 “표창 시 제13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상장의”를 “상장을 수여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감사부서로 하여금”을 “감사부서에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제1공적심의회와 제2공적심의회(이하 “공적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위원장이”를 “공적심의회 위원장이”로, “지명한”을 “미리 지명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,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공적심의회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(공훈에 따른 훈장, 포장 등의 등급을 말한다)의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한다.

③ 제1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(1)부시장이 맡고, 위원은 시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④ 제2공적심의회는 시장 또는 장관급 상당의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한다.

⑤ 제2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맡고, 위원은 시 4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⑦ 공적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.

제14조의 제목 “(소속기관 공적심의회)”를 “(시 소속기관 공적심의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소속기관장”을 “소속기관의 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”을 “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”으로, “표창권자가”를 “시 소속기관의 장이”로 한다.

제1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7조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



기록부에 그 사실을 작성하여야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표창장

제 호

표 창 장

성명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장 ○○○

[별지 제2호서식] 상장

제 호

상 장

성명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장 ○○○

[별지 제3호서식] 감사장

제 호

감 사 장

성명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장 ○○○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</u>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서울특별시</u> <u>시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적용범위) <u>시</u>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<u>조례</u>가 정하는 바에 <u>의한다</u>.</p>	<p>제2조(<u>다른 조례와의 관계</u>) <u>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 <u>조례</u>에서 ----- <u>따른다</u>.</p>
<p>제4조(표창권자)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자(이하 "표창권자"라 한다)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표창장, 상장 : 서울특별시장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, 시 소속기관의 장(3급 이상 및 소방서장에 <u>한한다</u>)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4조(표창권자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한한다. 이하 같다</u>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표창장 수여대상)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</p> <p>1. <u>직무에 특히 성실하고</u>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, 시·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</p>	<p>제7조(표창장 수여대상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직무를 성실히 수행</u>----- ----- -----</p>

및 임직원(이하 "공무원등"이라 한다)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. 다만,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2. ~ 4. (생략)

제8조(상장 수여대상)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
1.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, 자치구, 개인 및 단체
2.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, 자치구, 개인 및 단체

제10조(표창방법 및 부상) ① 표창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창장,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장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.

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, 상패,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-----  
-----  
- 다만, 공적이 현저하여 제13조에 따른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등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.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상장 수여대상) -----  
--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  
-----.

1. -----  
----- 공무원등, -----  
-----
2. -----  
----- 공무원 등, -----  
-----

제10조(표창방법 및 부상) 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,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. 이 경우 각 표창 서식의 세부 양식은 시장이 정한다.

② -----  
범위-----  
-----.

제11조(표창대상자의 추천) ① 시 소속기관의 장, 자치구청장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의 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시 및 자치구 소속이 아닌 공무원(이하 "외부공무원"이라 한다)을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기관의 장이 외부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한다.

제12조(공적심의회) ① 표창권자는 표창시 해당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공적심의회는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,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.

제13조(시 공적심의회) ① 시 본청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심의회를 둔다.

제11조(표창대상자의 추천) ① --  
-----  
-----  
-----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미리 받아야 한다.

제12조(공적심의회) ① -----  
표창시 제13조에 따른 -----  
----- . ----- 상장을  
수여하는 -----.

② -----  
-----  
----- 감사부서에  
-----  
-----.

제13조(시 공적심의회)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제1공적심의회와 제2공적심의회(이하 "공적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국무총리 표창이상 훈격의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의회를 두고, 제1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, 위원은 시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2. 시장표창 대상 및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, 제2공적심의회를 두고, 제2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, 위원은 시 4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<신 설>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

<삭 제>

<삭 제>

② 제1공적심의회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(공훈에 따른 훈장, 포장 등의 등급을 말한다)의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한다.

⑥ 공적심의회 위원장이 ---  
-----  
----- 미리 지명한다 -----



무를 대행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14조(소속기관 공적심의회) ① 시 소속기관장의 표창 수여를 위한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별로 공

-----.

③ 제1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(1)부시장이 맡고, 위원은 시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④ 제2공적심의회는 시장 또는 장관급 상당의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한다.

⑤ 제2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맡고, 위원은 시 4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⑦ 공적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.

제14조(시 소속기관 공적심의회)

① --- 소속기관의 장-----  
-----  
-----

적심의회를 둔다.

② 제1항의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 및 위원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표창권자가 임명한다.

제17조의2(기록부의 비치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기록부에는 제17조에 따른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 교부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----.

② -----  
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

-----  
-----  
-----  
-- 시 소속기관의 장이 -----

-----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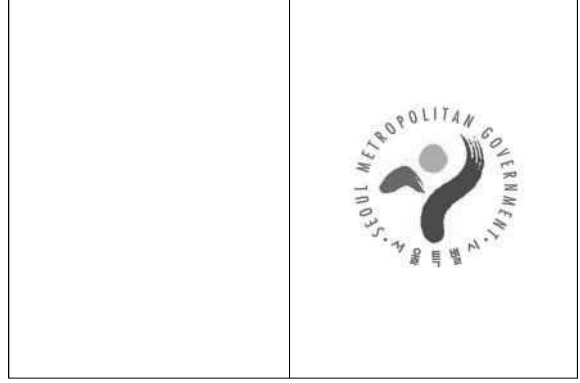
제17조의2(기록부의 비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7조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기록부에 그 사실을 작성하여야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-----	-------

[별지 제1호서식] 표창장

〈표 지〉



※ 바탕 : 진감색, 시휘장 : 금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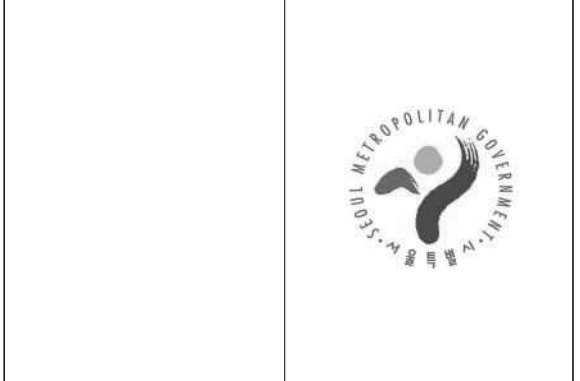
〈내 지〉



※바탕 : 연주황, 시건물 : 금박, 시휘장 및 리본 : 금박  
글씨 : 검정색, 테두리줄 : 주황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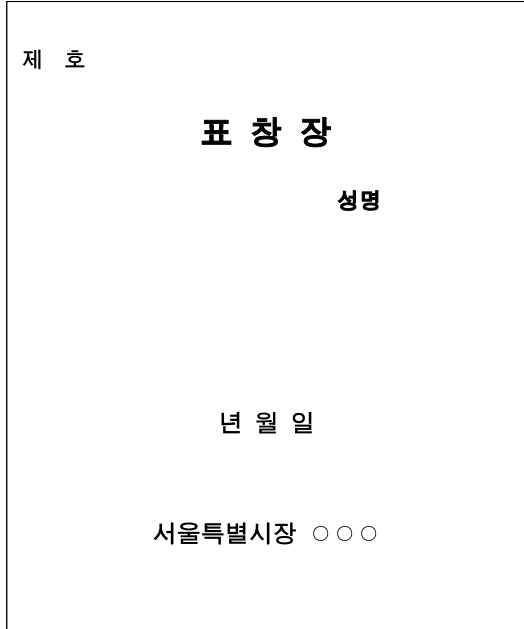
[별지 제2호서식] 상장

〈표 지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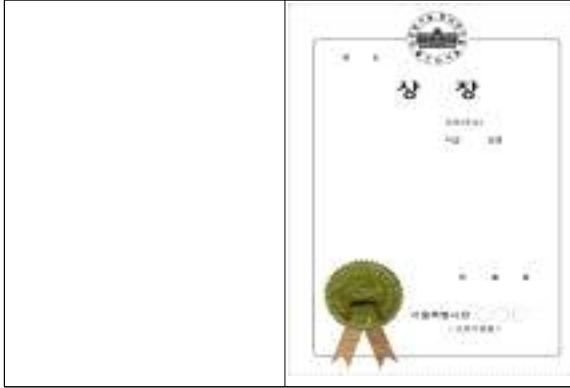
※ 바탕 : 진감색, 시휘장 : 금박

[별지 제1호서식] 표창장



[별지 제2호서식] 상장

〈내 지〉



※바탕 : 연주황, 시건물 : 금박, 시휘장 및 리본 : 금박  
 글씨 : 검정색, 테두리줄 : 주황색

제 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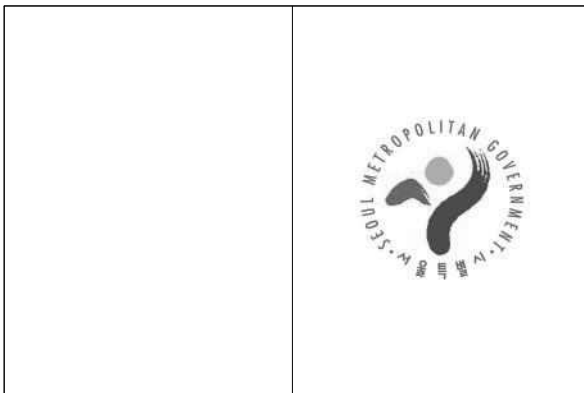
**상 장**  
성명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장 ○○○

[별지 제3호서식] 감사장

〈표 지〉



※ 바탕 : 진감색, 시휘장 : 금박

제 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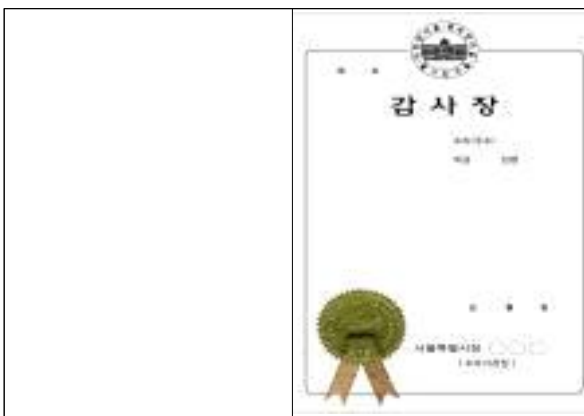
**감 사 장**  
성명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장 ○○○

[별지 제3호서식] 감사장

〈내 지〉



※바탕 : 연주황, 시건물 : 금박, 시휘장 및 리본 : 금박  
 글씨 : 검정색, 테두리줄 : 주황색